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6. 19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6. 19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9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7. 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)

가. 제안이유

○ 자연학습장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인 뒷받침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, 자연학습장에서의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, 위탁운영 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자연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·조사·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명예관장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10조)
- 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자연학습장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자연학습장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
- 자연학습장에서 교육 및 문화생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| 답변 내용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과 관련하여 무역·개발주식회사와 사전에 얘기가 된 것입니까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 시설 관리공단 또는 무역·개발주식회사 등 입찰을 통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.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예관장을 1인 임명하는데 굳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예관장은 1층 생태관의 기증자를 임명하여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혹 직원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조례에 명기한 것입니다. |

- |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관람료에 개인, 단체간 차이가 많은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물가조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타시·군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. |
|--|---|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관람료가 타시·군에 비해 높지 않으니 그대로 인정해 주면 좋을 것임
- 관람료는 자연학습장의 관리 및 필요경비에 소요됨

나. 반대토론

- 관람료가 단체에 비해 개인이 너무 높으니 개인 관람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 요지

○ 별 첨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관련 제332호 |
| 의결년월일 | 2000. 7. 6 (제79회) |

제출년월일 : 2000. 7. 3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탁기간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 체결시 약정서에 명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위탁동의안 처리시 위탁기간을 규정하도록 함
- 사용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"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"로 되어 있으나 글의 문맥상 맞지 않아 조정함
- "교육 및 문화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"라고 하였으나 교육 및 문화행사는 기이 제4조(용어의 정의)에 포함되어 이 조문의 설치가 무의미함

2. 주요골자

- “자연학습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라는 조항을 삭제(안 제11조제2항)
-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대상 중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을 “위반되었을 때”를 “위반하였을 때”로 수정(안 제19조제1항제1호)
- “자연학습장에서는 교육 및 문화행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”라는 조문을 삭제(안 제25조)
-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조문의 수정(안 제26조)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안 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위반되었을 때”를 “위반하였을 때”로 한다.

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“제26조”를 “제25조”로 한다.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자연학습장(이하 “자연학습장”이라 한다)의 설치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이용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자연학습장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72-1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자연학습장의 설치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용어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자연학습장”이라 함은 시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돋고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체험의 장이며, 시민의 건강·휴양·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문화와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.
2. “시설”이라 함은 자연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기반 및 부대시설, 장비 등을 말한다.

제5조(시설) 시장은 자연학습장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.

1. 관리사무소·출입문·울타리 등 관리시설
2. 동·식물·농업생활사관(짚·풀, 농경유물 등)·자연학습관(곤충 및 만물고기의 생태전시관, 공룡화석관 전시관 등)·대강당(예식장, 영상홍보실 등 겸용) 등 교육시설
3. 식생활학습관·농기계전시관·식품가공연구실·병해충종합진단실·토양검정실·가축질병진단실·조직배양 실 등 과학시설
4. 주차장·휴게소·매점·휴게음식점·화장실 등 편의시설
5. 자연학습체험과 휴식을 위한 휴양·유희·운동시설
6. 기타 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자연학습을 위한 기반 및 부대시설장비 등

제6조(휴관일) 시장은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명예관장) ① 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관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관련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의견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② 명예관장은 시장의 필요에 따라 자연학습장 운영에 관련한 연구·조사·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임기)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해임)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4. 기타 사업목적 수행이 종료되었을 때

제10조(자원봉사요원) 시장은 자연학습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돋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자연학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관람료) 시설물의 유지, 관리, 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관람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전염성 질환자
2.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

3.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

4.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
제14조(관람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여야 한다.

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
2. 국군의날에는 군인, 경찰의날에는 경찰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

3.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와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

4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5. 단체입장을 할 때, 다만 20인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5조(사용허가) ① 자연학습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.

② 자연학습장 시설의 사용은 부천시의 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.

③ 특별한 시설설치라 함은 기존 시설 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, 음향, 무대, 기타시설 등 특수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6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
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
3.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7조(사용료) ① 자연학습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/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.

⑤ 관람료 징수를 위한 자연학습장 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.

제18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9조(허가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1.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
2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3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어려울 때
4. 공용·공익상 필요할 때
5.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0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2.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
3.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

제21조(사용중단 신고)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·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원상복구) ①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칠거한 시설물은 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.

제23조(손해배상)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기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24조(권리의 양도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, 인도하거나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5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자연학습장 관람료

| 구 분 | 개 인 | 단 체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|
| 0~3세 어린이, 노인(65세 이상) | 무료 | — | ○ 유아원·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 도 단체인솔일 때는 단체요금을 적용함 |
| 4~12세 어린이 | 500원 | 200원 | |
| 중·고생, 군인 | 700원 | 300원 | |
| 어 른 | 1,000원 | 600원 | ○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|

[별표 2]

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

| 사용구분 | 기준 | 사 용 요 금(원) | | 기 타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| |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| 개인 및 일반단체 | |
| 장 당 | • 2시간 | 20,000 | 40,000 | • 2시간 기준이며, 추가시 1시 간당 5,000원 가산 • 기준시간 이하 시간은 기준 시간 요금을 적용함 |
| 기타시설 | • 유아방 • 소강의실 • 예절교육장 • 조리실습실 | 5,000 | 10,000 | • 2시간 기준이며, 추가시 1시 간당 5,000원 가산 |
| 영 상 | • 비디오프로젝트 • 활동기 등 • 비디오촬영기 | 5,000 | 10,000 | • 신청자 직접조작 • 직원배치 |
| 음 향 | • 음향기기 (녹음기, 마이크) | 5,000 | 10,000 | • 음향 : 국민의례 음향 • 신청자 직접조작 |
| 조 명 | • 4, 5, 6, 9월(봄, 가을) : 시간당 단가 • 7, 8월(여름) : 시간당 단가 • 10, 11, 12, 1, 2, 3월(겨울) : 시간당 단가 | | | • 전기료는 실제 사용료 산정 정수 |
| 냉·난방 | • 냉방(7, 8월) : 시간당 단가 • 난방(1, 2, 3, 10, 11, 12월) : 시간당 단가 | | | • 냉·난방료는 사용기준표에 의함 |
| 기타사항 | • 기타시설 사용시 사용구분에 의거 유사사용품목 요액을 적용 | | | |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
| 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자연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 제11조(운영의 위탁) ②(삭제) |
| 제19조(허가의 취소) ①(생략) 1.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되었을 때 2~5(생략) ②생략 | 제19조(허가의 취소) ①(현행과 같음) 1.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~5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|
| 제25조(교육 및 문화행사) 자연학습장에서는 교육 및 문화행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. | (삭제) |
| 제26조(규칙) (생략) | 제25조(규칙) (현행과 같음) |